

제주은행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리변경작업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일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의 유통수익률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외화대출의 경우에는 통화별 기준금리(Term SOFR, TIBOR, EUR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중 고객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동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1) CD91일물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3영업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증가의 단순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동합니다.
 - (2)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 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 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마다 변동합니다.
 - (3) 통화별 기준금리(Term SOFR, TIBOR, EURIBOR) 1개월물(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은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동됩니다. 국제시장금리는 공신력있는 통신회사(Refinitiv(구 Reuters),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아 적용합니다.
 - 1) 「SOFR기준금리」는 뉴욕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채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을 담보로 하는 자금거래시장의 실제 거래비용을 바탕으로 가중중앙값을 산출하여 일일 오전 8시(美 동부표시기준)에 공표합니다.
 - 2) 「Term SOFR기준금리」는 SOFR금리가 1일물 금리로 기간물 금리를 사전에 확정할 수 없어 CME그룹에서 고시하는 기간물 금리를 적용합니다.
 - 3) 「TIBOR기준금리」는 일본의 16개 시중은행들이 제시한 금리에서 상하 각각 2개씩을 제외하고 12개 은행의 금리를 평균하여 산정하며, 일본은행연합회가 영업일 오전 11시에 공표합니다.
 - 4) 「EURIBOR기준금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EMMI(THE 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가 57개 유럽은행 간 거래금리를 평균해 산출합니다.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증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채권평가와 나이스 및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금융채 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증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별 금리에 차이를 감안하여 매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금리를 의미하며 할인여유, 구매자금, 무역금융 등은 총액한도 차입효과를 감안한 건별 일수에 해당하는 고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하고 당좌대출, 종합통장대출 등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② 「단일금리부 변동여신, 이란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목적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가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수신금리부 변동여신, 이란 고객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COFIX(신규취급액 기준,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금리는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3개월, 6개월 또는 1년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말하고, 이자율은 3개월, 6개월 또는 1년마다 변동됩니다.

제 3 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안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포함. 이하같은점에 상환할 때에는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기일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2. 「대출잔여일수」는 중도상환 일(만기일)부터 대출만료일(만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대출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대출경과일수(대출개시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말합니다. 분할상환대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별로 계산하고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대출기간」은 신규취급일로부터 대출만료일(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금의 대출잔여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2.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당행이 약정기일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당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4. 대출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

제 4 조 지연배상금 외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은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의한 할인여유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상환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

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국가경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고 조달 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가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여력 부족 등으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기타 국가경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③ 제1항의 차주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된 경영실적자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가절인 경우, 신문TV등의 언론매체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2조에 의한 기한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한도약정수수료

- ① 한도약정수수료 대상 대출한도의 여신거래약정시(신규, 연기, 재약정 포함) 제1조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의 요청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및 본 약정서에서 정한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 한도약정수수료의 반환은 없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의 요청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 등에서 정한 차주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에는 약정한도변경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약정한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당초 거래기간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월할계산(월미만 절사)하여 환산합니다.
- ④ 약정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는 약정한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월할계산(월미만기간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제 8 조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 ①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빠져나 대출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이자(이하 「미수이자」라 합니다)등은 한도초과된 다음날부터 갚기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⑤ 당좌대출의 경우, 제6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⑥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할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만료일전에 발행한 어음·수표를 여신기간만료일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 ⑦ 미수이자 발생한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급을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다음날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9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10 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은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용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목적인 실행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서라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판권변제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330000800102)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단위 : 원)

종 별	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명의인(또는 수탁자)	예금잔액	담보한도액 [Min(여신한도액, 예금잔액)*100%]	신규일자	만기일자
		수 익 자				

제 13 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합니다.

구 분	20	20	20	20	20
부 채 비 율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비율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대주주(최대주주)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은행 앞으로 서면 통지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 · 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 14 조 자료의 제출 등

-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 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기 기업외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 15 조 자금용도의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대출금(한도거래여신의 경우 인출금)의 용도와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 ② 자금용도의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일반 여신 : 여신 취급일(한도거래여신의 경우 인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법인의 한도거래여신 : 인출금이 일상적인 상거래대금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은행이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③ 용도의 유용 최초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3년까지, 추가 적발시 적발일로부터 10년까지 (신규 여신(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규 가계대출 포함) 취급이 제한)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용도외유용 적발정보가 제공되고, 타 금융기관의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자금용도의 유용 행위가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또는 신고)됩니다.

제 16 조 대출실행단

-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증가 또는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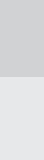
제 17 조 기타 특약사항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약정 내용 서면 통지 희망 여부	☐ 원함 ☐ 원하지 않음 ☐ 원함 ☐ 원하지 않음	본 인 (경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본인 및 자서 확인	소 속	직 위	성 명



(330000800103)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용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휴 및 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 신청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정보제공업체)와 제공 또는 당행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제공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나. 본인정보의 제공·이용 동의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당행의 각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행 홈페이지 : www.jejubank.co.kr, 고객센터 : 1588-0079

(주의: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중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신, 수신 및 카드업무 등 관련 금융상품이 해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또는 전국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당행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연락처 : 064-720-0200
- 전국은행연합회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02)3705-5117~9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국번없이) 1332

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 및 오류정보 정정 요구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각 영업점 앞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최근 1년간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경우 본인이 그 주요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 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가능

나.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

